

## 1. 개정이유

혁신도시발전추진단 업무분장 변경 및 존속기한 연장('23.3.1~'24.2.28)과 별도정원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, 변경된 업무분장 사항 및 변경된 별도정원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혁신도시지원정책과 예·결산 및 혁신도시 특별회계 소관 업무를 혁신도시정책총괄과로 이관함(제5조 사무분장)
- 나. 국토교통부 5급 별도정원 2명을 타 부처 파견 5급 별도정원 2명으로 변경함(별표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.

4. 혁신도시 관련 예·결산 총괄
5. 혁신도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
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고위 공무원단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 이하	계
부 단 장	1(1)						1(1)
혁신도시정책총괄과		1		1(1)	2(2)	3	7(3)
혁신도시산업과			1(1)		5(1)[4]	1	7(2)[4]
혁신도시지원정책과			1(1)		4(1)[4]	3[1]	8(2)[5]
혁신도시대외협력과			1<1>	1[1]	6(1)[5]	1	9(1)<1>[6]
합 계	1(1)	1	3(2)<1>	2(1)[1]	17(5)[13]	8[1]	32(9)<1>[15]

\* ( )표시 인원(9명)은 별도정원이 인정된 직급, [ ]표시는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·민간전문가 파견 직급임

\*\* < >로 표시된 혁신도시대외협력과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함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2024년 2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사무분장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혁신도시정책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4. ~ 11.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혁신도시지원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<u>혁신도시 관련 예·결산 총괄</u></p> <p>2. <u>혁신도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</u></p> <p>3. ~ 15. (생략)</p> <p>⑦ (생략)</p>	<p>제5조(사무분장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혁신도시 관련 예·결산 총괄</u></p> <p>5. <u>혁신도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</u></p> <p>6. ~ 13. (현행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.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1. ~ 13. (현행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